

# 환경책임보험 갱신 및 정산안내

2018.06

## DB손해보험

### 배병철 과장

# 목 차

- 01 환경책임 갱신프로세스
- 02 현황조사표 작성
- 03 환경책임 정산프로세스
- 04 정산 산출근거자료
- 05 정산 FAQ

#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

##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을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갱신시기 : 2018년 6월 30일까지 갱신 완료

### 2. 의무가입 대상

구분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5종)</li> <li>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li> </ul>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5종)</li> <li>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li> </ul>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폐기물처리시설</li> <li>*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해당없음</li> </ul>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아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li> <li>-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li> <li>-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li> </ul> </li> </ul>
유해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li> <li>*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제조·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이상 취급시 해당</li> </ul>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시설 중 아래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li> <li>-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li> </ul> </li> </ul>

### 3. 보험료 계산시 수량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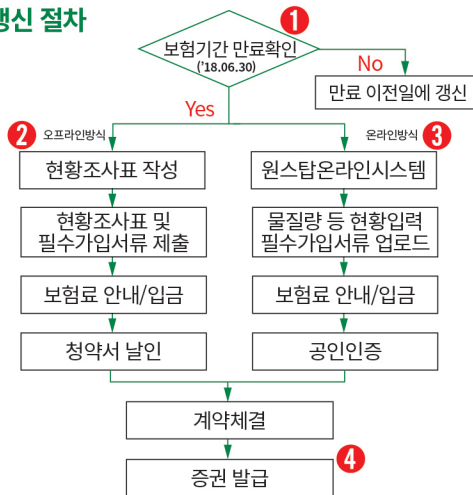
-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연간 배출량의 '용질' 기준 수량
- 2) 폐수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연간 배출량의 '용질' 기준 수량
- 3)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연간 처리량
- 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저장용량(허가량)
- 5) 화학물질취급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연간 취급량의 '용질' 기준 수량
- 6) 해양시설 : 해양환경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저장용량(허가량)

### 4. 각 군별 의무가입 보장금액

구분	가 군	나 군		다 군	
		소기업의 시설	소기업외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소기업외의 시설
보장금액	300억원	80억원	100억원	30억원	50억원

※ 자기부담금은 해당 보장금액의 0.5%로 산정  
(단, 소기업 중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는 0.25%로 산정)

### 5. 갱신 절차



- ① 보험기간 만료확인  
'18.06.30 만료 계약은 보험 만기일 이전 갱신을 완료해야 함.
- ② 오프라인방식 선택  
1단계: 현황조사표 작성  
2단계: 현황조사표 및 필수가입서류\* 제출  
3단계: 보험료 안내/입금  
4단계: 청약서 날인
- ③ 온라인방식 선택  
1단계: 가입 현황 입력  
2단계: 물질명/물질량 등 입력 및 필수가입서류\* 업로드  
3단계: 보험료 안내/입금  
4단계: 청약서 날인(공인인증)
- ④ 증권 발급  
\*필수가입서류: 사업자등록증, 각종 인·허가증, 물질량 확인자료 등

6. 미가입시 벌칙 :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6개월이하 영업정지)

7. 문의처 :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 1670-5420)  
※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시행보험사 :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 손해보험

※ 갱신 업무는 대표보험사 DB손해보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보험가입 설계, 보험료 산출 및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018 현황조사표 작성 매뉴얼>

## 1 기초정보 시트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신규가입 또는 갱신가입)을 위한 사업장 현황조사표**

본 현황조사표는 2018년도 환경책임보험 가입(신규가입 또는 갱신가입)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조사표입니다.  
 작성하실 내용은 사업장 기초정보, 시설별 인허가정보, 배출·취급물질 정보 및 시설평가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현황조사표 내용이 정확히 작성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산출과 시설평가 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성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사고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작성 기준

- ⇒ 대기·수질·폐기물·화학 시설 : **2017년도(2017.1.1~2017.12.31) 연간 배출·처리·취급 물질량**
- ⇒ 해양·토양 시설 : **본 현황조사표 작성시점 현재 신고된 저장용량**

■ 작성완료 후 보내실 곳

- ① ⇒ 갱신 가입자 : **2017년 가입 당시 보험담당자 E-mail (보험증권 하단 또는 만기안내문 하단 참조)**
- ⇒ 신규 가입자 : **eilkorea@dbins.co.kr**

② 사업장관리코드 (신규가입 시 공란으로 비워주세요)

확인사이트 <https://www.eilkorea.or.kr:3443/hmp/selBpcl/popup/selBpclSearch.do>

③ 표준산업분류코드 (⇒ "코드검색표" 시트 복사 가능)

← 선택

사업장 정보 (보험계약자)			사업장 소재지 (보험가입주소)			
회사명			신우편번호			도로명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만 지번주소 사용
사업장명			시/도(선택)			시군구읍면
법인번호		-	도로명or길+ 건물번호 (상세주소)			
사업자번호		-				

본사 담당자 정보			사업장 담당자 정보		
실무자명		부서명	실무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E-mail

배상책임한도 위험군 조합 (선택) ⇒ 하단 주의사항 참고		
비고 조건 적용 전	비고 조건 적용 후	소기업 여부

보험시작일	2018-05-21
보험종료일	2019-05-21
배상책임한도	위험군 조합 재선택

- ① 환경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 현황조사표 작성 후 [eilkorea@dbins.co.kr](mailto:eilkorea@dbins.co.kr)로 제출 /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현황조사표 작성 후 보험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 ② 보험증권에서 **사업장관리코드**를 확인하여 필수 기재 (처음 가입 시 공란으로 제출)
- ③ 사업장 **영위 업종** 선택 (노란색 셀에 마우스 클릭하여 목록에서 선택 - 목록이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경우, "코드표검색" 시트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가능)
- ④ **사업장 정보** 및 **보험가입 소재지 사항** 필수 기재
- ⑤ 본사와 연계하여 가입하는 경우, **본사 담당자** 및 **사업장 담당자** 각각의 정보를 모두 기재 (사업장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 담당자 정보만 기재)
- ⑥ **배상책임한도 위험군 조합**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및 비고 참고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미해당)
- ⑦ "**위험군 조합 재선택**"으로 표시되는 경우 ⑥의 **위험군 조합 재선택 요망** (정상인 경우 배상책임한도액 표시)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8.시행]

## [별표 2]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 (제4조 관련)

적용대상 시설	시설의 범위 및 법정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	나군	다군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의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kL 이상인 시설		1)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의 40배 이상인 시설		1)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기준수량 이상 기준수량의 40배 미만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이상인 시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비고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위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2. 동일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내에 위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및 제7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및 제7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본다.
4.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
5.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 ※ 배상책임한도 위험군 조합 예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3종시설과 저장용량 1만kL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이 있는 '소기업'인 경우  
 ⚡ 대기='나'군, 토양='가'군 동시 존재하므로 '비고1'에 따라 '가'군 해당 ▶ 비고 조건 적용 전 = '가'군  
 ⚡ '가'군이면서 '소기업'이므로 '비고3'에 의해 최종적으로 '나'군 적용 ▶ 비고 조건 적용 후 = '나'군  
 ⚡ 소기업 여부 = 'Y' 선택 ▶ 배상책임한도 **80억**으로 자동 설정 (정상)

### ※ 2018 현황조사표 작성 시 주의사항 (공통)

- 1사업장 당 1보험계약 가입이 원칙이며, 1보험계약 가입을 위해 1현황조사표가 작성되어야 함
- 사업장 내 여러 시설 중 최소 1개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보험에 가입
  - 예 : 사업장 내 대기1종, 수질3종(특정유해물질없음), 500kL용량의 석유류 저장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대기시설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나, 보험은 대기, 수질 및 토양시설 모두 가입하여야 함.
- 시설 별 물질 정보 작성 기준
  - 대기·수질·폐기물·화학 시설 : 2017년도(2017.1.1~12.31) 연간 배출·취급 물질량 (kg단위로 기재)
  - 해양·토양 시설 : 현황조사표 작성시점 현재 신고된 저장용량 (L단위로 기재)
- 사업장 내 배출·취급 물질이 선택목록에 없는 경우
  - '목록에 없는 물질' 영역에서 물질명(CAS No. 포함)과 물질량을 직접 기재
-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시행령 별표2 비고5), 사업장 사이에 도로, 타 소유지 등이 있는 경우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대기/수질) 공동방지사설 통해 배출하는 경우
  - 공동방지사설 해당여부 'Y'선택 후 해당 시설의 명칭, 사업자번호, 담당자명 및 연락처까지 반드시 기재 (공동방지사설 운영주체 사업장은 해당여부 'N'으로 선택)
- (수질) 폐수배출유형 별 작성 기준
  - 종말처리장유입(또는 직접방류) : 실제 배출(방류)하는 모든 물질량 기재
  - 일부위탁처리='Y'인 경우 : 위탁 후 잔량만 기재
  - 전량위탁처리='Y'인 경우 : 위탁하는 물질량을 '0kg'으로 기재
  - 수탁업체의 경우 : 종말처리장유입(또는 직접방류)에 'Y'선택 후 실제 처리하는 모든 물질량 기재
  - 전량재이용(폐수무방류사업장)의 경우 : 모든 물질량을 '0kg'으로 기재
-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만 작성 ('처리' 외의 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작성 대상이 아님)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 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함

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정보	시설종별선택 (택1)	1종	2종	3종	4종	5종
	특정물질배출여부 (택1)	배출	미배출			
	인허가기관	<input type="text"/>	인허가일자	년 월 일	인허가번호	<input type="text"/>

대기 배출 물질 정보 (배출 물질 모두 기재)			대기배출시설 평가 정보 (각 목록별 해당사항 선택)	
No.	물질명 선택 ( <input type="text"/> "코드검색표" 복사 가능)	물질량 입력 (kg)	평가 항목 선택	점수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작성 주의사항**  
⇒ 골목별 연간 배출량 산정 후 물질별로 합산하여 기재 (산정 시 일반배출구와 클린시스템배출구 구분)  
⇒ 먼지는 입자상물질로 선택

가입분류	물질명 기재 (Cas No.)	물질량 입력 (kg)
1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0 기타대기물질 A014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공동방지지설명칭	공동방지지설번호	공동방지지설담당자	공동방지지설연락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공동방지지설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시 'Y' 선택 후 필수 기재 (공동방지지설 운영주체는 해당없음)**

회차	측정 농도값	단위	환산계수	배출 가스량 [m <sup>3</sup> /min]	물질량 계산 결과 [kg]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회차	측정 농도값	단위	환산계수	환산농도 [mg/m <sup>3</sup> ]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증을 토대로 해당사항에 'Y'선택 후 인허가기관, 일자, 번호 정보 기재
- ② 대기배출물질 선택 후 물질량 기재 (노란색 셀에 마우스 클릭하여 목록에서 선택 - 목록이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경우, "코드표검색"시트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가능)
- ③ 대기배출물질이 선택목록에 없는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과 물질량을 ③에 직접 기재
- ④ 공동방지지설을 통해 배출하는 경우, 해당여부에 'Y'선택 후 해당 공동방지지설의 명칭, 사업자번호, 담당자 및 연락처까지 모든 내용 반드시 기재 (공동방지지설 운영주체 사업장은 해당여부 'N'으로 선택)

인허가서류 상 공동방지지설을 통한 배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해당 부분 보험사로 제출)

⑤ **대기배출시설 평가 목록**에서 실제 해당하는 사항들을 선택

⑥ (물질량을 모르는 경우) **물질량 계산기**에서 자가측정(또는 환경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값을 입력하여  
물질량 계산 (입력항목 : 측정물질명, 연간가동시간, 측정회차별 농도 및 단위, 배출가스량 등)



# 3 수질 시트

1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정보	시설종별선택 (택1)	1종	2종	3종	4종	5종	
	특정물질배출여부 (택1)	배출	미배출				
	폐수배출유형 (택1)	종말처리장유입(또는 직접방류)	공동방지시설유입	일부위탁처리	전량위탁처리	전량재이용(무방류)	
인허가기관		←선택 인허가일자		년	월	일	인허가번호

2

폐수 배출 물질 정보 (배출 물질 모두 기재)		폐수배출시설 평가 정보 (각 목록별 해당사항 선택)	
No.	물질명 선택 (※"코드검색표" 복사 가능)	물질량 입력 (kg)	평가 항목 선택
1	←선택		←선택
2	←선택		←선택
3	←선택		←선택
4	←선택		←선택
5	←선택		←선택
6	←선택		←선택
7	←선택		←선택
8	←선택		←선택
9	←선택		←선택
10	←선택		←선택
11	←선택		←선택
12	←선택		←선택
13	←선택		←선택
14	←선택		←선택
15	←선택		←선택
16	←선택		←선택
17	←선택		←선택
18	←선택		←선택
19	←선택		←선택
20	←선택		←선택
21	←선택		←선택
22	←선택		←선택
23	←선택		←선택
24	←선택		←선택
25	←선택		←선택
26	←선택		←선택
27	←선택		←선택
28	←선택		←선택
29	←선택		←선택
30	←선택		←선택
31	←선택		←선택
32	←선택		←선택
33	←선택		←선택
34	←선택		←선택
35	←선택		←선택

5

3

작측 목록에 없는 물질은 명칭 직접 기재		
가입분류	물질명 기재(Cas No.)	물질량 입력 (kg)
1	기타수질물질 B0137	
2	기타수질물질 B0137	
3	기타수질물질 B0137	
4	기타수질물질 B0137	
5	기타수질물질 B0137	
6	기타수질물질 B0137	
7	기타수질물질 B0137	
8	기타수질물질 B0137	
9	기타수질물질 B0137	
10	기타수질물질 B0137	

4

6

중금속 농도 입력 [단위 : mg/L]	비점오염물질 입력 [단위 : m <sup>3</sup> /일]	연간 조업일수 입력 [단위 : 일]	물질량 계산 결과 [kg]
			0.00

**※ 작성 주의사항**

- ⇒ 자체방류 물질량 산정시 농도는 방류전 자체 처리 후 농도로 산정
- ⇒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처리 후 농도로 산정
- ⇒ 위탁처리는 타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공동방지시설로의 유입은 위탁처리 아님
- ⇒ 폐수무방류란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등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 전량 위탁처리·재이용·중발·무방류 처리하는 물질의 물질량은 0kg으로 기재

-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증을 토대로 해당사항에 'Y'선택 후 인허가기관, 일자, 번호 정보 기재
- ② 폐수배출물질 선택 후 물질량 기재 (노란색 셀에 마우스 클릭하여 목록에서 선택 - 목록이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경우, "코드표검색"시트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가능)

▪ 폐수배출유형 별 작성 기준

- 종말처리장유입(또는 직접방류) : 실제 배출(방류)하는 모든 물질량 기재
- 일부위탁처리='Y'인 경우 : 위탁 후 잔량만 기재
- 전량위탁처리='Y'인 경우 : 모든 물질량을 '0kg'으로 기재
- 수탁업체의 경우 : 종말처리장유입(또는 직접방류)에 'Y'선택 후 실제 처리하는 모든 물질량 기재
- 전량재이용(폐수무방류사업장)의 경우 : 모든 물질량을 '0kg'으로 기재

- ③ 폐수배출물질이 선택목록에 없는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과 물질량을 ③에 직접 기재
- ④ 공동방지시설을 통해 배출하는 경우 ①의 폐수배출유형에서 공동방지시설유입= 'Y'선택 후 ④가 활성화(노

란색)되면 모든 내용 반드시 기재 (공동방지사설 운영주체는 ①에서 종말처리장유입='Y'선택)

**인허가서류 상 공동방지사설을 통한 배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해당 부분 보험사로 제출)**

- ⑤ 폐수배출시설 평가 목록에서 실제 해당하는 사항들을 선택
- ⑥ (물질량을 모르는 경우) 물질량 계산기에서 자가측정값을 입력하여 물질량 계산 (입력항목 : 측정농도, 폐수 방류량, 연간조업일수 등)

4 폐기물 시트

①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정보	시설구분 (택1)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형태 (다중선택)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기타(중화 등)			
	인허가기관	←선택			인허가일자	년	월	일

⇒ 사업장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시설이 공정상 연계되어 운영되는 경우, 물질 정보를 폐기물 영역에만 기재합니다.  
 ⇒ 폐유 및 폐유기용제 등 모든 가입 물질은 반드시 연간 처리량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폐기물 재활용 물질 정보 (재활용 물질 모두 기재)			폐기물 재활용시설 평가 정보 (각 목록별 해당사항 선택)			
No.	물질명 선택 (⇒ "코드검색표" 복사 가능)	물질량 입력 (kg)	평가 항목 선택		점수	
1		←선택			←선택	
2		←선택			←선택	
3		←선택			←선택	
4		←선택			←선택	
5		←선택			←선택	
6		←선택			←선택	
7		←선택			←선택	
8		←선택			←선택	
9		←선택			←선택	
10		←선택			←선택	
11		←선택			←선택	
12		←선택			←선택	
13		←선택			←선택	
14		←선택			←선택	
15		←선택			←선택	
16		←선택			←선택	
17		←선택			←선택	
18		←선택			←선택	
19		←선택			←선택	
20		←선택			←선택	
21		←선택			←선택	
22		←선택			←선택	
23		←선택			←선택	
24		←선택			←선택	
					합계	0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우측 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 선택 (택1)	파쇄분쇄-탈피시설 (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	③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참고
	절단시설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	

-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토대로 해당사항에 'Y'선택 후 인허가기관, 일자, 번호 정보 기재 (사업장 내 운영중인 처리시설 형태에 'Y'선택하면 해당 영역이 활성화(노란색)됨)
- ② (활성화된영역만) 폐기물처리물질 선택 후 물질량 기재 (노란색 셀에 마우스 클릭하여 목록에서 선택 - 목록이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경우, "코드표검색"시트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가능)
- ③ 폐기물(재활용)시설인 경우 해당 사항에 'Y'선택
- ④ (활성화된영역만)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목록에서 실제 해당하는 사항들을 선택

① 화학 시설 인허가정보

시설구분 (예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관	연허가일자	년 월 일 인허가번호

② 화학 제조,사용 물질 정보 (취급 물질 모두 기재)

No.	물질명 선택 (≡ "코드표검색" 복사 가능)	물질명 입력 (kg)
1	+선택	
2	+선택	
3	+선택	
4	+선택	
5	+선택	
6	+선택	
7	+선택	
8	+선택	
9	+선택	
10	+선택	
11	+선택	
12	+선택	
13	+선택	
14	+선택	
15	+선택	
16	+선택	
17	+선택	
18	+선택	
19	+선택	
20	+선택	
21	+선택	
22	+선택	
23	+선택	
24	+선택	
25	+선택	
26	+선택	
27	+선택	
28	+선택	
29	+선택	
30	+선택	
31	+선택	
32	+선택	
33	+선택	
34	+선택	
35	+선택	
36	+선택	
37	+선택	
38	+선택	
39	+선택	
40	+선택	

화학 운반,보관,판매 물질 정보 (취급 물질 모두 기재)

No.	물질명 선택 (≡ "코드표검색" 복사 가능)	물질명 입력 (kg)
1	+선택	
2	+선택	
3	+선택	
4	+선택	
5	+선택	
6	+선택	
7	+선택	
8	+선택	
9	+선택	
10	+선택	
11	+선택	
12	+선택	
13	+선택	
14	+선택	
15	+선택	
16	+선택	
17	+선택	
18	+선택	
19	+선택	
20	+선택	
21	+선택	
22	+선택	
23	+선택	
24	+선택	
25	+선택	
26	+선택	
27	+선택	
28	+선택	
29	+선택	
30	+선택	
31	+선택	
32	+선택	
33	+선택	
34	+선택	
35	+선택	
36	+선택	
37	+선택	
38	+선택	
39	+선택	
40	+선택	

화학시설 평가 정보 (각 목록별 해당사항 선택)

No.	평가 항목 선택	점수
1	+선택	
2	+선택	
3	+선택	
4	+선택	
5	+선택	
6	+선택	
7	+선택	
8	+선택	
9	+선택	
10	+선택	
11	+선택	
12	+선택	
13	+선택	
14	+선택	
15	+선택	
16	+선택	
17	+선택	
18	+선택	
19	+선택	
20	+선택	
21	+선택	
22	+선택	
23	+선택	
24	+선택	
25	+선택	
26	+선택	
27	+선택	
28	+선택	
29	+선택	
30	+선택	
31	+선택	
32	+선택	
33	+선택	
34	+선택	
35	+선택	
36	+선택	
37	+선택	
38	+선택	
39	+선택	
40	+선택	

③ 최종 목록에 없는 물질 - 제조,사용

No.	물질명 기재(Cas No.)	물질명 입력 (kg)
1		
2		
3		
4		
5		
6		
7		
8		
9		
10		

③ 최종 목록에 없는 물질 - 운반,보관,판매

No.	물질명 기재(Cas No.)	물질명 입력 (kg)
1		
2		
3		
4		
5		
6		
7		
8		
9		
10		

☞ 사업장 내 배출,처리,취급하는 모든 물질을 기재하세요. ☞ 사업장 내 배출,처리,취급하는 모든 물질을 기재하세요.

-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을 토대로 해당사항에 'Y'선택 후 인허가기관, 일자, 번호 정보 기재
- ② 취급 화학물질 선택 후 물질량 기재 (노란색 셀에 마우스 클릭하여 목록에서 선택 - 목록이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경우, "코드표검색"시트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가능)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기준으로 구분 작성

- 제조·사용 시설
- 운반·보관·저장·판매 시설
- 동일 물질이 제조 시설과 사용 시설 모두에서 취급되는 경우, 둘 중 더 큰 값을 기재  
예 : 벤젠 제조량이 10kg, 사용량이 20kg인 경우, 벤젠 취급량은 제조·사용에서 20kg으로 기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제조·사용하기 위해 운반·보관·저장하는 물질은 기재하지 않음
- 하나의 사업장 내 다수의 취급시설에서 취급되는 물질량은 물질별로 합산하여 기재 (용질량 반영)  
예 : 1번시설에서 황산(95%) 1kg을 사용하고, 2번시설에서 황산(90%) 2kg을 사용한 경우 황산 2.75kg (=1kg\*95%+2kg\*90%)으로 합산 기재

- ③ 취급 화학물질이 선택목록에 없는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과 물질량을 ③에 직접 기재
- ④ 화학물질취급시설 평가 목록에서 실제 해당하는 사항들을 선택



**1** 토양 시설 인허가정보

시설구분 (택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토양오염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관	←선택	인허가일자	년	월	일
		인허가번호			

**2** 토양 시설 정보 (사업장 내 시설 합산 기재)

No.	시설명 (선택아님)	저장용량 (리터)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D0101	

**3** 토양시설 평가 정보 (각 목록별 해당사항 선택)

평가 항목 선택	점수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합계	0

※ 토양오염관련 유의사항

1. 토양을 매체로하여 발생한 토양오염사고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약관상 특정토양오염시설을 제외하고는 면책
2. 토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이면서 물질 보관을 위한 저장 탱크를 보유한 경우 그 저장탱크의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 시
  - 해당물질이 토양에 스며들어 옆부지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토양오염으로 면책
  - 해당물질이 누출되어 옆 양식장에 피해가 간 경우에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고로 부책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허가)증을 토대로 해당사항에 'Y'선택 후 인허가기관, 일자, 번호 정보 기재

② 사업장 내 토양시설(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기재

- 하나의 사업장 내 다수의 해양시설 저장용량은 동일 시설별로 합산하여 기재
  - 예 : 1번 석유류저장시설 용량이 3,000kL, 2번 석유류저장시설 용량이 5,000kL인 경우 석유류제조저장 시설 8,000,000L로 합산 기재
- 해양시설과 중복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토양시설에만 저장용량 기재 (해양시설 미기재)
- 화학 보험가입 물질의 저장시설이 토양시설과 중복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용량은 토양시설에서 제외

③ 토양시설 평가 목록에서 실제 해당하는 사항들을 선택

##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정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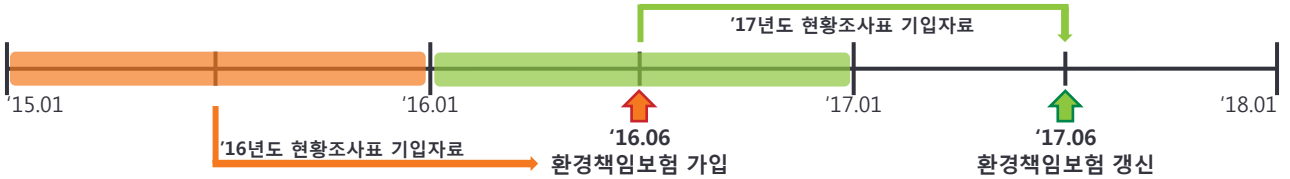
### ▶ 보험료 정산

환경책임보험 보험료는 일종의 "예치금" 입니다.

'16년 보험가입 시 납부하셨던 보험료는 '15년도 1년간 물질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16년도 **확정** 물질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정산)

그리고 다시 계산된 보험료와 기존에 납부하셨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16년도 확정 물질량 데이터 집계가 '17년 하반기에 완료되므로, '16년 계약의 보험료 정산은 '18년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 보험료 정산 절차

보험료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정산 안내 → 2018 환경책임보험 설명회(3월 26~30일) → 정산 템플릿 작성/'16년 확정 물질량 근거자료 제출(4월 20일 限) → 정산 물질/물질량 정합성 검토 → 근거자료 보완 요청 → 정산보험료 산출 → 보험료 정산



### ▶ Q&A

#### Q1. 환경책임보험 정산은 무엇인가요?

→ 보험가입 사업장의 연간 사용량은 업황, 경기변동 등의 사유로 연도별 변동성이 크므로 보험가입 시점에는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며, 추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 Q2. 환경책임보험 계약 중 올해 정산 대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올해 정산하셔야 할 대상은 보험시작일이 **2016년 6월 13일 ~ 2016년 7월 1일**인 모든 계약입니다.

#### Q3. 정산대상 계약 확인, 정산 템플릿 작성, 근거자료 제출 등 관련 문의사항

→ 보험증권 하단의 취급자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근거자료

### ■ 물질량 산정 근거자료(2016년 연간 데이터)

- (1) 대기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odac.nier.go.kr) 확정배출량자료, TMS 및 자가측정 데이터 + 연간 가동시간 자료 또는 인허가증 갑지
- (2) 수질 : 전국오염원조사(WEMS, wems.nier.go.kr) 보고자료 또는 관할 기관에 제출한 폐수배출업소조사표, WTMS 및 자가측정 데이터 + 연간 폐수방류량 자료 또는 인허가증
- (3) 폐기물 : 올바로(Allbaro, www.allbaro.or.kr) 폐기물 실적 보고자료
- (4) 화학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자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사용 실적자료
- (5) 해양 : 해양시설 (변경)신고 증명서  
- 보험 종료 시점의 해당시설의 인허가(신고)상 저장용량
- (6) 토양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  
- 보험 종료 시점의 해당시설의 인허가(신고)상 저장용량

## 제출시 유의사항

- 정산 템플릿 작성 후 제출 시, 파일명은 “정산 템플릿(계약자명\_증권번호).xls” 형식으로 저장  
ex) 계약자명이 “OO화학” 이고 증권번호가 “120160010001” 인 경우  
→ 파일명 : 정산 템플릿(OO화학\_120160010001).xls
- 정산 템플릿은 반드시 **엑셀** 파일로 제출  
- 갱신 시 작성하는 현황조사표가 아닌 정산 템플릿 작성 후 제출
- 제출시 **필수 근거자료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 안내된 필수 근거자료 목록 확인
- 근거자료의 연도가 적절한지 확인  
-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의 경우 **2016년** 배출·처리·취급량 자료  
- 해양 및 토양의 경우 **보험 종료 시점**의 인허가(신고)증
- 보험 시작일 확인  
- 보험 시작일이 **2016년 6월 13일 ~ 2016년 7월 1일**인 경우만 정산 대상



## 매체별 물질량 산정

### (1) 대기 :

- 물질별로 배출구별 연간배출량을 합산
- 자가측정 자료의 경우, 배출구별 측정항목별 측정 농도, 배출가스 유량, 연간 조업시간, ppm단위 환산을 이용하여 연간배출량 산정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장 현황조사표” 상의 “대기배출량 산정산식” 시트 활용 가능)

### (2) 수질 :

- 물질별로 방류구별 연간방류량을 합산
- 물질별 처리 후 농도(mg/L) X 일폐수방류량(m<sup>3</sup>/일) X 연간 조업일수(일/년) ÷ 1,000 (“kg/년” 단위로 물질량 산정)

### (3) 폐기물 :

- 사업장내 폐기물 처리시설별(소각/매립/재활용/기타) 폐기물 처리량을 폐기물 종류별로 합산하여 작성
-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경우 작성 대상 아님

### (4) 화학 :

- 물질량 작성 시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상의 취급량이 아닌 함유량 최대치(MAX)를 고려한 용질량(취급량 × 함유율)을 산정하여 작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연간 취급량에 대해 용질량을 산정하여 작성

### (5) 해양 :

- 보험 종료 시점의 해당시설의 인허가(신고)상 저장용량
- 정산 대상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해당

### (6) 토양 :

- 보험 종료 시점의 해당시설의 인허가(신고)상 저장용량
- 정산 대상은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해당

환경책임보험 정산 관련, 영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 하오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중도에 변경된 회사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 원칙적으로 이전계약자가 함이 원칙이지만, 회사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이전 계약 주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변경된 계약자가 정산주체가 됩니다.

보통 회사 양도/합병시 모든 권리 의무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보통이고, 2016 년 실적보고 데이터를 최근 (2017 년도 말)에 확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변경된 계약자/피보험자가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정산/환급시 현(現) 계약자에게 추징/환급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만약 변경 전(前) 계약자로 계약이 남아 있다면, 계약자/피보험자 변경배서를 선행한 후 정산해야 합니다.

### 2. 간편정산이란 무엇이며, 누가 안내하나요?

=> 간편정산대상 사업장은 "수질"유형만 취급하는 시설이 배출되는 물질을 "전량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정산지원센터에서 대상을 확인하여 안내 중이며, 계약자의 회신이 오는대로 EDMS 에 서류를 첨부 하여 확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 간편정산 대상 사업장에게 문의가 올 경우, 기 배포된 정산대상 LIST 에서 "간편정산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대상임이 확인되면, 첨부하는 "간편정산신청서(첨부 1)" + "배서청약서(정산보험료 0 원)"에 서명 날인 받아 EDMS 첨부 후 바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 3. 간편정산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 어떻게 정산하나요?

=> 간편정산대상사업장은 오직 "수질" 유형만 취급하는 시설이 "전량위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기", "수질", "화학", "폐기물" 등 다양한 매체를 복수 가입하면서 이 중 "수질"만 위탁인 경우는 간편 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매체에 대한 정산은 실적보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질"에 대해서는 실적보고나 자가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허가증", "위탁 처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4. 사업장에서 당사에서 발송한 공문을 받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법적으로 계약자에게 75 일 전, 30 일 전 갱신을 안내하게 되어 있는 프로세스에 따라 자동으로 발송되는 갱신 안내문에 정산 안내문을 삽입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샘플 파일(첨부 2)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자원이동, 인사발령 등으로 취급자가 변경된 건은 누가 처리하면 되나요?

=> 사업장별로 현재 2018년 3월 기준 취급자로 기존 계약을 맵핑하여 정산대상 리스트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변동사항은 개별 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산 요청시 "자료검증신청서" 제일 하단 **신청자**에 변경된 취급자 성명 및 사번을 기입하시고, 메일 텍스트에 취급자를 변경한다고 기재해 주시면, 정산지원센터에서 자료검증 및 배서설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6. 폐업한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1) 폐업 후 상당기간이 도과하여 담당자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 : 일정 기간 도과 후 해당 계약 건 취합하여 인허가청에 폐업 사실관계 여부 확인 예정입니다. 해당계약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제출 요청시 발송 바랍니다.

2) 같은 회사의 A 사업장은 폐업하였으나 다른 B 사업장은 영위하고 있는 경우 : B 사업장에서 A 사업장의 폐업 전 물질량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산합니다. 추징/환급 등이 생기는 경우 B 사업장으로 계약자/피보험자 변경배서를 선행한 후 환급/입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배서시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A 사업장 폐쇄로 인해 계약자 B 사업장으로 변경 후 정산)

3) 양도양수 및 합병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폐업 후 인수하여 이전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하기의 내용의 "폐업사실확인서"에 취급자 및 계약자의 날인을 받아 EDMS에 첨부한 후 "0"원 배서하여 처리합니다.

### <폐업사실확인서> 예시

#### 계약 정보

*계약자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사업장소재지,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본정보 명기*

상기 사업장은 xxxx년 xx월 xx일부로 폐업하면서 모든 근거자료가 폐기되어, 2016년 환경책임보험 정산 관련(증권번호 xxxxxxxxxxx)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변동 없이 본 확인서로 정산에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xxxx년 xx월 xx일

계약자 : xxxxxx (서명)

취급자 : OOOO (확인)

### **7. 이미 2,3 월경 정산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업장은 어떤 경우인가요?**

=> 환경책임보험 TFT 에서 본(本) 정산에 앞서 지난 2 월에 이미 약 300 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Pilot 정산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 업체는 이 300 개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현재 정산보험료가 산출되어 전산에 배서설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산 안내 후 추징/환급해 주시면 됩니다. 정산내역에 대한 문의사항은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수행사로 문의 바랍니다.

### **8. 취급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정산 안내를 받아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업장은 어떤 경우인가요?**

=> 배포된 리스트 "정산담당주체"열에서 "전문수행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고 계약내용이 복잡한 비교적 보험료가 높은 약 1,100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수행사"가 정산 기초자료 접수, 검증 및 보험료 산출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이 완료되면 취급자에게 LMS 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후 배서청약서 발송/회신 및 보험료 추징/환급 등의 절차는 다른 정산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산내역에 대한 문의사항은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수행사로 문의 바랍니다.

### **9. 4/20 일까지 정산신청을 하지 않거나, 끝까지 정산을 거부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 5 월 초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해당 인허가청의 지도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산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책임보험 정산특별약관에 의거, 계약상 의무이므로 정확한 물질량에 근거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독려 바랍니다.